

[별표3-1]

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

가. 간이형 공사

1. 토목

구분 (주된공사의 추정가격)	평가등급	
	만점계수(B)	시공실적 평가방법
300억원 미만	1.3	시공실적점수=10점(배점)×(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)/(예비가격기초금액×B)
배 점	10점	

2. 건축

구분 (주된공사의 추정가격)	평가등급	
	만점계수(B)	시공실적 평가방법
300억원 미만	2.0	시공실적점수=10점(배점)×(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)/(예비가격기초금액×B)
배 점	10점	

3. 전문, 조경, 전기, 통신,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

구분 (주된공사의 추정가격)	평가등급	
	만점계수(B)	시공실적 평가방법
300억원 미만	3.0	시공실적점수=10점(배점)×(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)/(예비가격기초금액×B) ※ 단, 준설공사는 만점계수를 1.3으로 적용
배 점	10점	

1)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1-1)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'예비가격기초금액×B' 까지만 인정한다.

1-2)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'예비가격기초금액×B×해당 전문업종 비율' 까지만 인정한다.

2)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(B)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\* 만점계수(B)×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

다만, 전문건설사업자가 '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'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(B)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\* 만점계수(B)×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×(1-종합공사 실적/예비가격기초금액)

나. 실적제한 공사

구분 (주된공사의 추정가격)	평가 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					
	A등급 200%이상	B등급 165%이상	C등급 130%이상	D등급 90%이상	E등급 50%이상	F등급 50%미만
300억원 미만						
배 점	10점	9.2점	8.3점	7.4점	6.5점	5.5점
평가 방법	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 또는 금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					

※ 주 : [별표2-5] 1)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